

##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제5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73조의2제2항, 제174조, 제176조,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자

제2조의2제8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금융거래 안심차단 신청에 관한 정보
- 제13조의3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가맹점모집인의 업무
- 제15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경우에는”을 “경우(제3자가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결합하여 스스로 이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.)에는”으로 한다.

제26조의5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기업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정보를 수집·가공·분석하여 제공하는 업무

별표5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7.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
별표6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### 1. (현행과 같음)

### 2. 거래정보

(1) 개인

등록정보	등록기관	등록기준		이용기관
		대상주체	등록시기	
마. 기타 금융거래 관련				
기타 금융거래 현황(거래 기관명, 종류 <sup>1)</sup> 등 포함)	영 제21조제2항의 기관 중 해당 등록정보 보유기관	해당 개인	등록사유발생일 부터 7영업일 이내	영 제21조제2항의 기관 중 해당 등록정보 보유기관, <b>신용정보회사</b>

주1)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범위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함

### 6. 공공정보

등록정보	등록기관	등록기준		이용기관
		대상주체	등록시기	
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자활기업, 마을기업, 소셜벤처기업 및 이와 유사한 기업의 인증·인가·인정·지정·등록 등의 여부에 관한 정보	(현행과 같음)			
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제43조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정보	(상동)			

## 8. 금융기관 안심차단 정보

등록정보	등록기관	등록기준		이용 기관
		대상주체	등록시기	
<u>금융거래안심차단신청 현황</u>	<u>영 제21조제2항의 기관 중 해당 등 특정보 보유기관</u>	<u>해당개인</u>	<u>등록사유발생시</u>	<u>영 제21조의제2항 의 기관 및 신용 정보회사</u>

## 부 칙

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의2(신용정보의 범위) ① ~ ④ (생략)</p> <p>⑤ 영 제2조제8항제3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”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 <p>⑥·⑦ (생략)</p> <p>⑧ 영 제2조제17항제9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”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2조의2(신용정보의 범위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「<u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</u>」 제173조의2제2항, 제174조, 제176조,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자</p> <p>⑥·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⑧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<u>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금융거래 안심차단 신청에 관한 정보</u></p>
<p>제13조의3(겸영업무) ① ~ ④ (생략)</p> <p>⑤ 영 제11조제6항제7호에서 “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</p>	<p>제13조의3(겸영업무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-----</p>

고시하는 업무”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

1. ~ 4. (생략)

<신설>

제15조의2(정보집합물의 결합 등) ① ~ ⑤ (생략)

⑥ 데이터전문기관은 자기가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결합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하여 결합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·2. (생략)

⑦ ~ ⑨ (생략)

제26조의5(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) 영 제21조의2제2항제3호에서 “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”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

1. ~ 4. (생략)

<신설>

-----  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가맹점모집인의 업무

제15조의2(정보집합물의 결합 등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  
-----  
-----

----- 경우(제3자가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결합하여 스스로 이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.)에  
는 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⑦ ~ ⑨ (현행과 같음)

제26조의5(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기업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정보를 수집·가공·분석하여 제공하는 업무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	금융감독원
소관부서	금융데이터정책과	디지털혁신총괄팀 디지털혁신감독팀
연 락 처	02-2100-2625	02-3145-7162 02-3145-7180